

본 책자는 한국의 품목번호(HSK) 기준 제72류, 제73류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쟁점과 사례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1편 철강제품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쟁점과 사례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1편
철강제품



서문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한-미 FTA를 기반으로 조성된 대미 통상환경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4월 2일 미국은 국가별로 11%에서 50%까지 각각 다른 상호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이 발표하는 상호관세를 포함한 모든 추가 관세는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수출기업에게 생소한 「비특혜 원산지」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세율이 부과되는 외국의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고세율 국가로 판정된다면 기업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비특혜원산지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대미 수출전략의 핵심입니다.

이 책자는 대미 수출기업의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판정사례를 정리한 실전형 안내서입니다.

원산지 관리를 위한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4월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백현



I. 미국 관세정책 현황 및 비특혜원산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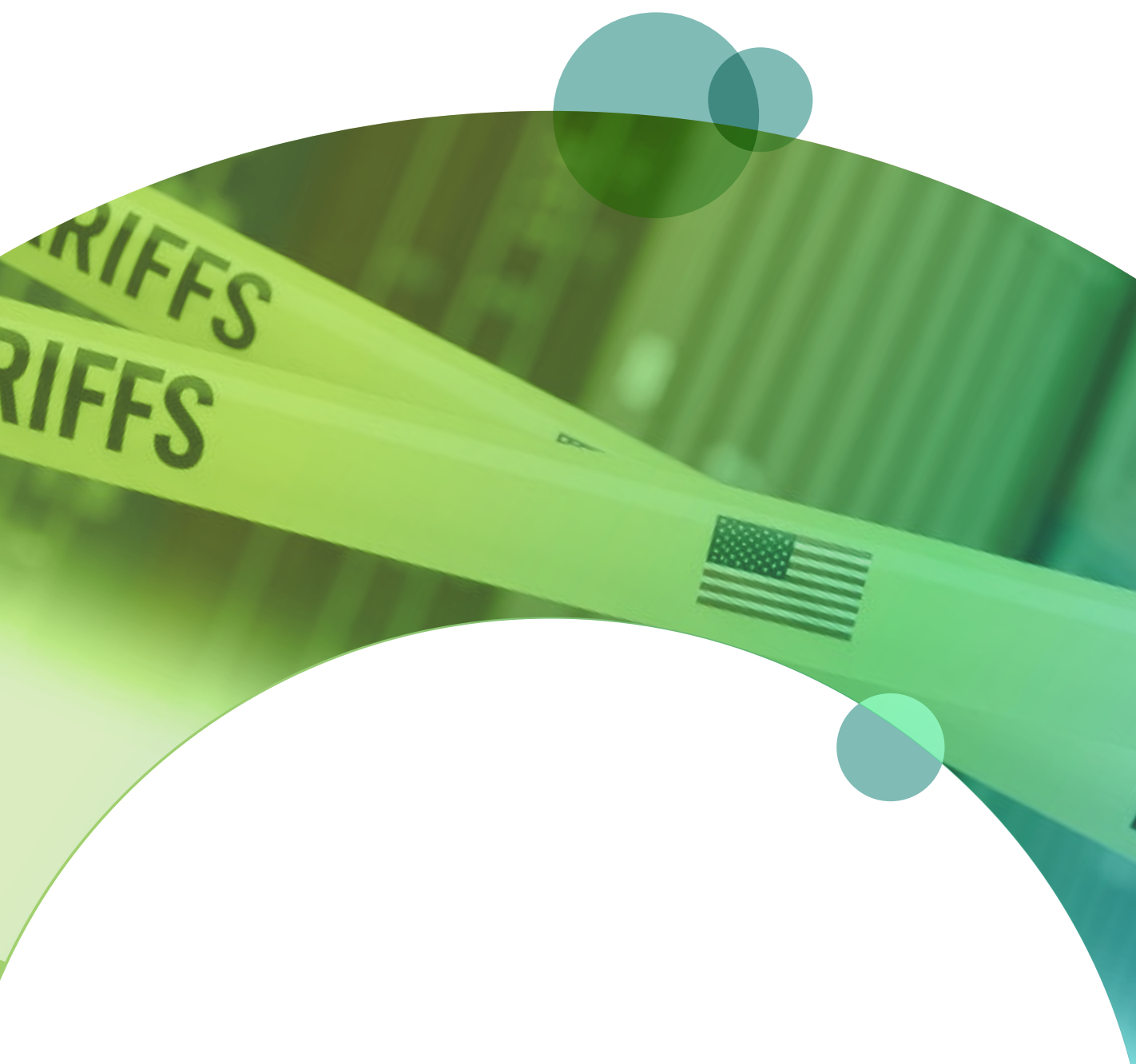
01. 미국의 관세정책 현황	09
02. 철강제품 관세	10
03. 미국의 원산지 기준	11
04. 철강 관세 로드맵 : 철강 관세 한눈에 보기	12
05. 미국의 사전심사제도	13

II.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

Case 01. 강철 금속 봉	18
Case 02. 스테인리스강 튜브	20
Case 03. 스테인리스강 와이어	22
Case 04. 비합금강판	25
Case 05. Pipe-in-Pipe(PIP) 어셈블리	27
Case 06. 스테인리스 강판	29
Case 07. 스테인리스 강판	31
Case 08. 페로실리콘 분말	33
Case 09. 주방용 스테인리스 싱크 키트	35
Case 10. 합금강판	37
Case 11. 호스클램프	39
Case 12. 방향성 전기강판	42
Case 13. 아연도금 앵글형 철강 시트	46
Case 14. 벌크헤드 어셈블리	49

부 록

CBP 사전심사제도 신청 방법	52
CBP 사전심사 사례 조회 방법	55



I.

미국 관세정책 현황 및 비특혜원산지 기준

01. 미국의 관세정책 현황	09
02. 철강제품 관세	10
03. 미국의 원산지 기준	11
04. 철강 관세 로드맵 : 철강 관세 한눈에 보기	12
05. 미국의 사전심사제도	13



01 미국 관세정책 현황

현황

-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대규모 관세 조치를 연이어 시행 중임.

특히, 4월 2일부로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종가세를 부과하고(4.5 시행), 57개국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이한 추가 관세(상호관세)*** 발표

* 우리나라 25%, 중국 125%, EU 20%, 일본 24%, 베트남 46%, 대만 32% 등이며,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국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시행 유예(기본세율 10%만 시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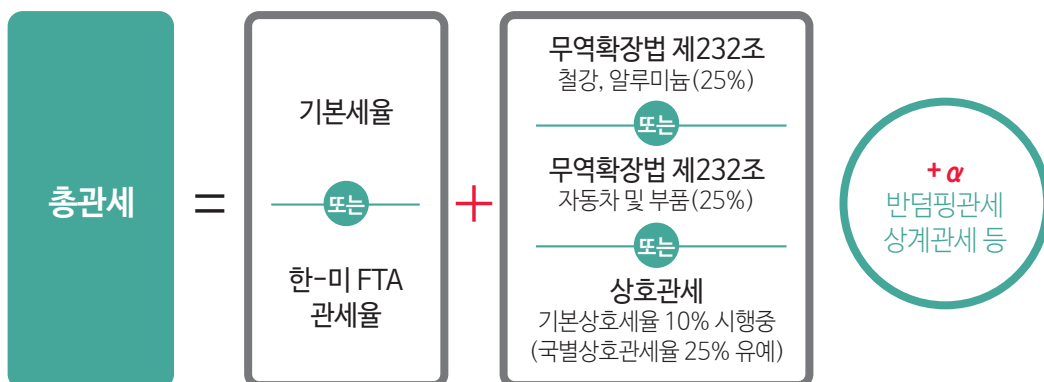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 주요 현황

- ① (03.12)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추가 25% 관세 시행(무역확장법 제232조)
- ② (03.26) 자동차 추가 25% 관세 시행(무역확장법 제232조)
- ③ (04.05) 기본 상호관세 10% 시행(국가비상경제권한법)
- ④ (04.09)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 우리나라 25% (국가비상경제권한법) ➡ 90일 유예 발표
- ⑤ (05.03) 특정 자동차부품 추가 25% 관세 시행 예정(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부과 체계

- 기본 또는 한-미 FTA 세율에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관세 또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등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이 더해지는 구조

〈한국산 물품의 미국 수출 시 적용되는 관세율〉



03 미국의 원산지 기준

Check Point

- ✓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으로 관세부과
- ✓ 원산지에 따라 세율 차이가 발생하며, 원산지는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판단함

가. 미국의 원산지 기준

- **한-미 FTA** : FTA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 **일반 원산지(비특혜원산지) 판단기준** : 둘 이상의 국가에서 상품 또는 재료를 생산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

관련 규정 : 미 연방규정 19 CFR 134

“원산지 국가”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산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말한다. 다른 나라에서 물품에 더해지는 추가 가공이나 추가 물질은 그러한 다른 국가에 이 장에서 의미하는 “원산지 국가”를 부여하기 위해 반드시 **실질적 변형**을 가져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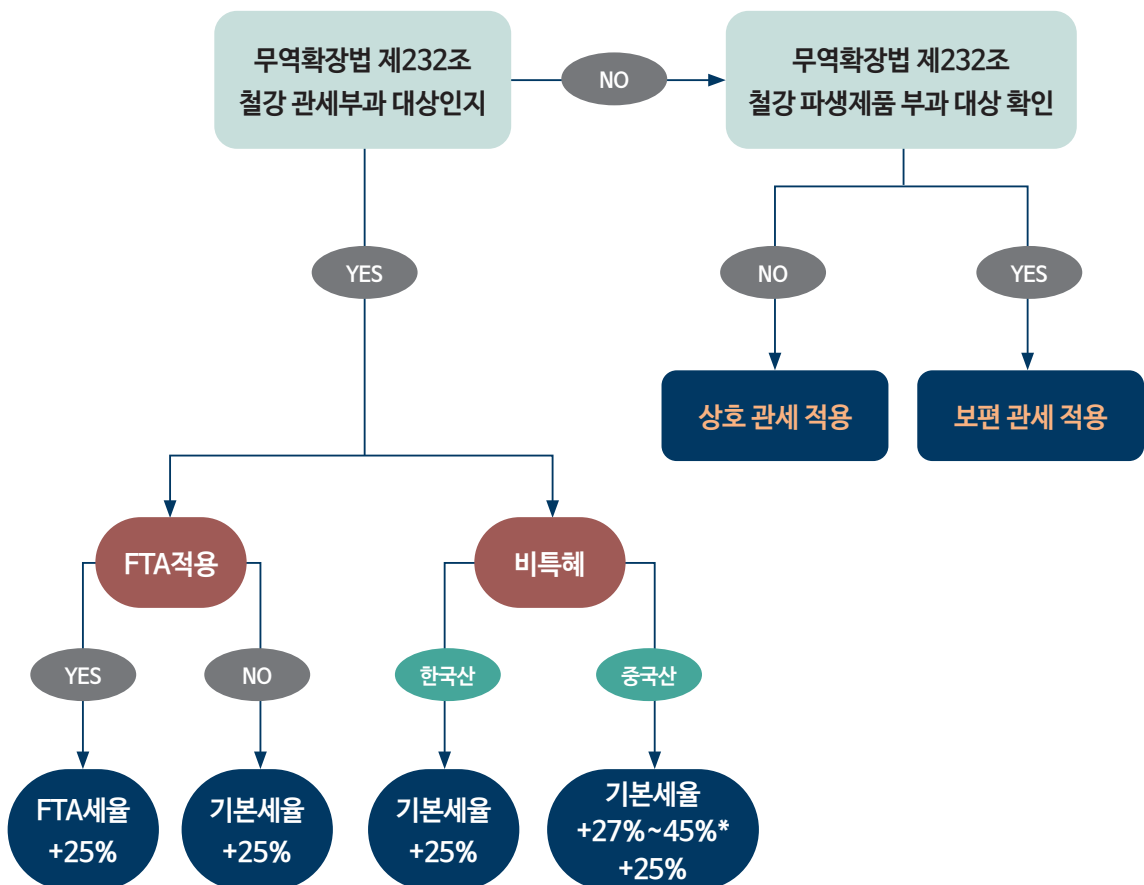
나.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

-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는 경우 ‘원산지’로 판단**
- **미 CBP*가 개별 사례별로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우리나라 관세청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기능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관세부과 및 징수 실무 담당

04 철강 관세 로드맵: 철강 관세 한눈에 보기

Check Point

- ✓ 품목번호에 따라 부과 세율 차이 발생
- ✓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른 원산지에 의해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



* 무역법 제301조 보복관세(7%~25%)+IEEPA(20%)
※ 對中 추가 관세는 미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 미국의 사전심사제도

Check Point

- ✓ CBP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수입 전 통관 리스크를 예방하고, CBP의 법적 구속력 있는 해석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CBP 사전심사제도 (CBP Advance Ruling, 19 CFR 177)

수입 전 품목분류, 원산지, FTA적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미국의 사전판정제도

- **신청** : 본부(Headquarters) 또는 뉴욕 소재 품목분류 전문부서(NCSD*)

* 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

일반적으로 관세평가(Valuation), 운송(Carrier) 등 주로 결정이 복잡한 판정은 본부(HQ)에서, 품목분류(classification) 등 결정이 간단한 경우의 판정은 뉴욕(NY)에서 처리함

- **신청방법** : 서면 또는 온라인
- **신청인** : 수입자, 수출자, 해당 판정 요청 사안의 이해관계자, 대리인
- **결정유형** : ① 품목분류, ② 원산지 표시, ③ 원산지, ④ FTA적용
- **답변기한** : 30일(일반적일 경우)



II.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

Case 01. 강철 금속 봉	18
Case 02. 스테인리스강 튜브	20
Case 03. 스테인리스강 와이어	22
Case 04. 비합금강판	25
Case 05. Pipe-in-Pipe(PIP) 어셈블리	27
Case 06. 스테인리스 강판	29
Case 07. 스테인리스 강판	31
Case 08. 페로실리콘 분말	33
Case 09. 주방용 스테인리스 싱크 키트	35
Case 10. 합금강판	37
Case 11. 호스클램프	39
Case 12. 방향성 전기강판	42
Case 13. 아연도금 앵글형 철강 시트	46
Case 14. 벌크헤드 어셈블리	49

※ 이 사례는 CBP에서 공개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법적 효력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강 관련 CBP 사전판정 사례 LIST

Case	판정번호	날 짜	사 례 명
01	HQ H308207	2021.02.02.	[강철 금속 봉]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02	NY N317203	2021.02.16.	[스테인리스강 튜브] 원산지 및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03	NY N320677	2021.08.25.	[스테인리스강 와이어] 원산지 및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04	NY N324853	2022.04.07.	[비합금강판] 원산지 및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05	NY N328989	2022.10.28.	[Pipe-in-Pipe 어셈블리] 원산지 및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06	NY N333889	2023.07.20.	[스테인리스 강판] 원산지 및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07	NY N334299	2023.08.22.	[스테인리스 강판] 원산지 및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08	NY N335063	2023.09.12.	[페로실리콘 분말] 원산지 및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09	NY N335300	2023.09.29.	[주방용 스테인리스 싱크 키트]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및 원산지 표시
10	NY N340819	2024.06.26.	[합금강판] 원산지 및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11	NY N341003	2024.07.15.	[호스클램프] 원산지 및 무역제재 대상 여부
12	HQ H337102	2024.09.03.	[방향성 전기강판] 실질적 변형 여부
13	NY N343690	2024.11.25.	[아연도금 앵글형 철강 시트] USMCA, 원산지 표시,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14	NY N345836	2025.02.28.	[벌크헤드 어셈블리] 원산지 및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Case 01. 강철 금속 봉

사 례 명

- [강철 금속 봉]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사 례 번 호

- HQ H308207(2021.02.02.)

사 실 관 계

요 청 자	Newborn Bros. Co.	
제 품	제 품 명	코킹 건용 강철 금속 봉(S45C, JIS G4061 기준)
	구 성	원형, 사각형, 육각형 프로파일(대만산)
	용 도	실란트/접착제 등을 밀어내는 용도의 코킹 건의 부품용
	원 재 료 H T S U S	
	완 제 품 H T S U 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대만산 프로파일 미국으로 수입 2. 18~24인치 길이로 절단 3. 양단 나사산 가공 4. 특정 위치에 오목한 자국이 나도록 스탬핑 5. 흑색 산화처리(부식 방지용)	

쟁 점 사 항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CBP 『19 C.F.R. §134』 규정은 『19 U.S.C. §1304』의 원산지 표시 요구사항과 예외를 규정하며,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의 결정은 실질적 변형에 기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실질적 변형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기준을 적용하며, 그러한 판단은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야 함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사례) 플렉스 소켓(flex sockets), 스피더 핸들(speeder handles), 플렉스 핸들(flex handles) 제작용 특정 수공구 부품들을 수입하여 미국에서 열처리, 표면 세척, 녹 및 부식 방지 처리 등 수행

(판결) 해당 부품들이 대부분 수입 전에 냉간성형(cold-formed) 또는 열간단조(hot-forged) 방식으로 최종 형상으로 가공되어 있었으며, 미국으로 수입 후에 수행된 가공(강도를 높이기 위한 열처리, 표면 세척을 위한 샌드블라스트 처리, 녹 및 부식 방지를 위한 전기 도금 처리 등)은 수입 부품의 명칭을 변경하지도 않았고, 가공 후 물품의 성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았으며, 해당 물품의 용도는 수입 시점에 이미 정해져 있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함

- CBP는 일반적으로 철강·금속 제품이 단순히 절단·나사 가공·산화방지 처리된 경우,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정함

참고 판례 : *CBP Ruling NY N284041, HQ 734186, HQ W968318, HQ 734716*

- **(판정 결과)** 미국에서 수행된 절단, 나사 가공, 오목 자국 스탬핑, 흑색 산화처리 등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 되지 않음

결론

- 미국 내 절단, 나사산 가공, 오목 스탬핑, 산화처리 등은 대만산 금속봉에 실질적 변형을 야기하지 않으므로, 해당 금속 봉의 원산지는 '대만'으로 유지됨

Case 02. 스테인리스강 튜브

사 례 명

- [스테인리스강 튜브] 원산지 및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17203(2021.02.16.)

사 실 관 계

요 청 자	Banner Industries of Northeast(N.E.), Inc. (대리인 : Dorsey & Whitney)	
제 품	제 품 명	스테인리스강 튜브
	구 성	
	용 도	반도체 제조 공정용
	원 재 료 H T S U S	7304.41.30 / 7304.41.60 / 7306.40.5040
	완 제 품 H T S U S	7304.41.30 / 7304.41.60 / 7306.40.504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독일, 한국 또는 미국에서 스테인리스강 튜브 제조 2. 독일로 이동하여 전해연마(electropolishing) 및 세정(cleaning) 공정 수행 3. 미국으로 수입	

쟁 점 사 항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①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19 C.F.R.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된 공정이나 재료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발생시켜야만 새로운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제301조, 제232조, 제2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 시에도 이와 같은 실질적 변형 기준 적용

참고 판례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741 F.2d 1368(1984)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 HQ 563205*

- 실질적 변형의 요건 : 물품의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참고 판례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1940)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참고 판례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1908)

참고 판례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Supp. 1026, *aff'd* 1 Fed. Cir. 21, 702 F.2d 1022(1983)

- 기계 가공 작업이 실질적인 변형을 초래하는지를 판단할 때, CBP는 가공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구분하며, 특정한 형태를 달성하기 위한 가공 작업과 단순히 외형상 미관이나 경미한 처리를 위한 가공 작업을 구분하여 판단함

- CBP는 연마(polishing), 유약 처리(enameling), 세척(cleaning)과 같은 장식 또는 마감 작업(embellishment and finishing operation)은 일반적으로 새롭고 다른 상업적 물품을 만들어내는 광범위한 공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있음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554689, HQ 071314*

- **(판정 결과)** 독일에서 수행한 작업은 단순한 표면 처리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제301조(독일, 한국, 미국 중 해당 국가)이 원산지로 판정됨

②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대통령 포고(Presidential proclamations 9704 and 9705)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관세 혹은 쿼터가 부과됨

- **(판정 결과)** 해당 제품(HTSUS 7304.41.30, 7304.41.60, 7306.40.5040)은 관세 또는 쿼터 대상일 수 있으며, 수입 시 Chapter 99(추가 관세 분류)와 함께 Chapter 72, 73 또는 76에 따른 본래 분류도 함께 신고해야 함

결론

- 독일에서 수행된 전해연마 및 세정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종 원산지는 튜브가 제조된 국가(독일, 한국 또는 미국)로 결정됨
- 최종 제품은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일 수 있음

Case 03. 스테인리스강 와이어

사 례 명

- [스테인리스강 와이어] 원산지 및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20677(2021.08.25.)

사 실 관 계

요 청 자	Aqseptence Group, Inc.	
제 품	제 품 명	스테인리스강 와이어
	구 성	Grade 304 또는 316 스테인리스강 와이어 로드
	용 도	여과, 분리 및 수처리 기술 솔루션 제품의 제조용
	원 재 료 H T S U S	7223.00.1061 또는 7223.00.1076
	완 제 품 H T S U S	7223.00.1061 또는 7223.00.1076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한국, 대만 또는 인도에서 스테인리스강 와이어 로드를 호주로 수입 (직경 5.5mm 또는 7.5mm) 2. 세척(Cleaning) 3. 건조(Drying) 4. Stretching 5. 냉간 인발(Cold-drawing) 6. 어닐링(Annealing, 열처리) 7. 재감기-리스폴링(Respooling) 8. 완제품(직경 1.8288mm~5.4888mm에 해당하는 6가지 다른 사이즈) 미국으로 수출	

쟁 점 사 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제232조 무역제재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①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19 C.F.R.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된 공정이나 재료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발생시켜야만 새로운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실질적인 변형이란, 가공된 결과물의 명칭(name), 성질(character) 또는 용도(use)가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

참고 판례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1940)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 2d 1201 (Fed. Cir. 1993)

- 가공 또는 결합 공정이 단순하여 물품의 본질적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참고 판례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1982), *aff'd*, 702 F.2d 1022(Fed. Cir. 1983)

- 단순한 와이어 드로잉(Drawing) 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음

참고 판례 : *Superior Wire v. United States*, 669 F. Supp. 472(CIT 1987), *aff'd*, 867 F.2d 1409(Fed. Cir. 1989)

(사례) 스페인산 와이어 로드(코일 형태)가 캐나다로 선적된 후 드로잉(Drawing) 공정을 거쳐 와이어로 가공되어 미국으로 수입

(판결) 와이어 로드와 와이어를 제조하는 것 외에는 용도가 거의 없으며, 이미 와이어 로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화학적 구성이 변화하여 최종 제품의 성질 및 용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Ferrostaal 판결에서 법원은 냉간압연 강판에 대한 “용융 아연 도금(hot-dip galvanizing)” 공정이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킨다고 판단했는데, 해당 공정은 냉간압연으로 인해 상실된 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어닐링과, 강판을 녹은 아연에 담가 화학적 조성을 변화시켜 녹 방지 성질을 부여하는 도금의 두 단계를 포함
- 법원은 어닐링이나 도금 단독으로는 실질적 변형을 이루지 않으며, 복합적인 제조 공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CBP는 어닐링이 복잡하거나 광범위하지 않으며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어닐링은 일반적으로 와이어 인발 공정 이후 수행되어 단독으로는 일반적으로 제한된 용도의 고유한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판단
- CBP는 어닐링이 실질적인 변형을 야기하는지는 열처리의 강도, 처리 시간, 비용, 복잡성, 열처리에 따른 부가가치, 그리고 강철의 기계적 특성과 용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

- **(판정 결과)** 일반적으로 어닐링 공정이 기계적 특성을 변화시킨다고는 하나 CBP는 본 사례에서 해당 공정이 와이어의 본질적인 성질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고 판정함
 - 해당 어닐링은 와이어에 고유하거나 뛰어난 특성을 부여하지 않고, 분리 및 수처리 환경에서의 특정한 용도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준비가 된 제품으로 만들지도 않으며, 열처리가 기계적 특성을 변화시킨다고 하였지만, 처리 시간, 비용, 또는 부가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② 제232조 무역제재 적용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대통령 포고(Presidential proclamations 9704 and 9705)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관세 혹은 쿼터가 부과됨
- **(판정 결과)** 해당 제품(HTSUS 7223.00.1061, 7223.00.1076)은 관세 또는 쿼터 대상일 수 있으며, 수입 시 Chapter 99(추가 관세 분류)와 함께 Chapter 72, 73 또는 76에 따른 본래 분류도 함께 신고해야 함

결론

- 호주에서의 세척, 드로잉, 어닐링 등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산지는 한국, 대만 또는 인도로 유지됨
- 최종 제품은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일 수 있음

Case 04. 비합금강판

사 례 명

- [비합금강판] 원산지 및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24853(2022.04.07.)

사 실 관 계

요 청 자	Meteor Horticulture Systems Inc. (대리인 : Pacific Customs Brokers Inc.)	
제 품	제 품 명	비합금강판
	구 성	
	용 도	미국 내 온실 배수 시스템(gutter systems) 제조용
	원 재 료 H T S U S	
	완 제 품 H T S U S	7212.40.500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프랑스 : 용융아연도금, 프라이머, 폴리에스터 코팅 처리된 냉간압연 비합금강 코일 제조 (폭 1120mm~2000mm, 두께 0.6mm) 2. 네덜란드 : (1) 언코일 → (2) 폭 312mm 또는 375mm로 절단 → (3) 일정 간격으로 천공 (2개 구멍) 처리 → (4) 리코일 3. 캐나다 : 특정 공정 없이 네덜란드에서 가공된 코일 수입 후 미국으로 수출	

쟁 점 사 항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제232조 무역제재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①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19 C.F.R.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된 공정이나 재료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발생시켜야만 새로운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실질적인 변형이란, 가공된 결과물의 명칭(name), 성질(character) 또는 용도(use)가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

참고 판례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1940)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 2d 1201 (Fed. Cir. 1993)

- 가공 또는 결합 공정이 단순하여 물품의 본질적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참고 판례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1982), *aff'd*, 702 F.2d 1022(Fed. Cir. 1983)

- **(판정 결과)** 해당 물품은 프랑스에서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에서 출발하였고, 네덜란드에서의 추가 가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판압연제품으로 남아있으므로 네덜란드에서 수행된 절단 및 천공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야기하지 않아 비합금강판의 원산지는 프랑스임
- **(기타 의견)** 요청자가 캐나다에서 수입된 것을 근거로 『19 C.F.R. §102』에 따른 원산지 판정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비합금강판은 캐나다에서 단순히 반입 및 반출만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가공이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USMCA 국가의 제품으로 간주될 수 없어 해당 기준을 근거로 원산지를 판단할 수 없음

② 제232조 무역제재 적용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대통령 포고(Presidential proclamations 9704 and 9705)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관세 혹은 쿼터가 부과됨
- **(판정 결과)** 해당 제품(HTSUS 7212.40.5000)은 관세 또는 쿼터 대상일 수 있으며, 수입 시 Chapter 99(추가 관세 분류)와 함께 Chapter 72, 73 또는 76에 따른 본래 분류도 함께 신고해야 함

결론

- 네덜란드에서의 절단 및 천공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원산지는 프랑스로 간주
- 최종 제품은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일 수 있음

Case 05. Pipe-in-Pipe(PIP) 어셈블리

사 례 명

- [Pipe-in-Pipe(PIP) 어셈블리] 원산지 표시 및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28989(2022.10.28.)

사 실 관 계

요청자	Venture Global LNG, Inc.	
제 품	제 품 명	Pipe-in-Pipe(PIP) 어셈블리 3종
	구 성	• LNG 저장 탱크에서 LNG 로딩 암까지 LNG를 이송하는 세 개의 파이프로 구성 - 메인라인 : 외경 914.44mm의 Invar 36% 니켈합금강 내부 파이프, 외경 1066.8mm의 스테인리스강 외부 파이프 슬리브, 단열재 및 스테인리스강 시트로 구성 - 오프로딩라인 : 외경 609.9mm의 ASME B31.3 기준 Invar 36% 니켈합금강 내부 파이프, 외경 762mm의 ASTM A358 기준 Type 304/304L 스테인리스강 외부 파이프 슬리브, 단열재 및 스테인리스강 시트로 구성 - 순환라인 : 68.27mm의 ASME B31.3 기준 Invar 36% 니켈합금 내부 파이프, 외경 323.9mm의 ASTM A358 기준 Type 304/304L 스테인리스강 외부 파이프, 단열재 및 스테인리스강 시트로 구성
	용 도	• 액화천연가스(LNG)를 저장 탱크에서 로딩 암(loading arms)으로 전달하는 용도 • 내부 파이프는 극저온 상태를 유지하여 LNG를 저장 탱크에서 해양 부두까지 이송하며, 외부 파이프는 내부 파이프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누출 시 이중 차단 역할을 수행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7306.90.500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이탈리아산 또는 독일산 Invar Ni36 내부 파이프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강 외부 파이프, Izoflex 단열재, 스테인리스강 시트, 보호캡 등 프랑스로 운송 후, 프랑스에서 2. Invar Ni36 내부 파이프 절단 및 베벨 가공 3. 스테인리스강 외부 파이프 샌드블라스트, 절단 및 베벨 가공 4. Invar Ni36 내부 파이프에 Izoflex 단열재 감싸기 및 스테인리스강 시트 고정 5. 스테인리스강 외부 파이프에 백링(backing ring) 용접 6. 내부 파이프를 외부 파이프에 삽입 7. 보호캡(weld preservation caps) 외관에 임시 부착 8. PIP 조립품 선적 준비 후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및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①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19 C.F.R.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된 공정이나 재료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발생시켜야만 새로운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제301조 및 제232조, 제2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 시 실질적 변형 기준을 사용
 - 실질적 변형이란 가공을 거쳐 물품의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제품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물품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유지되는 단순 제조 또는 조립 공정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CBP는 구성품이 다양한 원산지를 가질 경우, 완성품으로 조립되었을 때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사례별로 판단하며, 구성품의 원산지, 한 국가 내에서 수행된 가공의 정도, 해당 가공이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부여했는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음
- 이 외에도, 설계 및 개발에 투입된 자원, 조립 후 검사 및 테스트 절차의 범위, 제조에 요구되는 작업자의 기술 수준도 고려될 수 있음을 명시
- 어느 하나의 요소가 결정적이진 않으며, 단순 조립은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음

참고 판정 : C.S.D. 80-111, 85-25, 89-110, 89-118, 90-51, 90-97

- **(판정 결과)** PIP 조립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Invar Ni36보다 중량이 큰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강 외부 파이프에 기인하며, 프랑스에서 수행된 조립 공정이 새로운 용도를 가진 전혀 다른 제품을 만들어 내는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은 것으로 판정하여 PIP 조립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원산지는 이탈리아로 판정

② 제232조 무역제재 적용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대통령 포고(Presidential proclamations 9704 and 9705)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관세 혹은 쿼터가 부과됨
- **(판정 결과)** 해당 제품(HTSUS 7306.90.5000)은 관세 또는 쿼터 대상일 수 있으며, 수입 시 Chapter 99(추가관세 분류)와 함께 Chapter 72, 73 또는 76에 따른 본래 분류도 함께 신고해야 함

결론

- 프랑스에서 수행한 조립공정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종 원산지는 스테인리스 외부 파이프가 제조된 국가인 이탈리아로 판정
- 최종 제품은 제232조 무역제재 적용 대상일 수 있음

Case 06. 스테인리스 강판

사 례 명

- [스테인리스 강판] 원산지 및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33889(2023.07.20.)

사 실 관 계

요청자	Millennia Stainless Inc.	
제 품	제 품 명	연마 및 코팅 처리된 Grade 304 또는 430 스테인리스 강판
	구 성	
	용 도	•가전제품, 실외용 그릴 등 최종 제품 생산용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7219.90.0025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인도네시아 - 스테인리스강 용해 및 주조 - 열간 압연(hot-rolling) - 피클링(pickling), 어닐링(annealing) - 냉간 압연(cold-rolling)을 통해 2B 밀 마감 처리 - 추가 공정을 위해 코일 형태로 중국으로 수출 2. 중국 - 연마(polishing) - 시트 형태로 절단(slitting) - 한쪽 면 PVC 코팅 / 반대쪽 면 지문방지(anti-fingerprint) 코팅 - 길이 맞춤 절단(cut-to-length) -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①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19 C.F.R.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된 공정이나 재료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발생시켜야만 새로운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원산지는 해당 물품이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변형’을 거친 국가이며, 이는 물품의 명칭(name), 성질(character) 또는 용도(use)에 변화를 초래하는 가공을 의미

참고 판정: CBP Ruling HQ 735009

- **(판정 결과)** 중국에서 수행된 제조 공정(연마, 절단, 코팅 등)은 해당 강판의 명칭, 성질 또는 용도를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임

②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대통령 포고(Presidential proclamations 9704 and 9705)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관세 혹은 쿼터가 부과됨
- **(판정 결과)** 해당 제품(HTSUS 7219.90.0025)은 관세 또는 쿼터 대상일 수 있으며, 수입 시 Chapter 99(추가 관세 분류)와 함께 Chapter 72, 73 또는 76에 따른 본래 분류도 함께 신고해야 함

결론

- 연마, 절단, 코팅 등의 중국 내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최종 스테인리스 강판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로 판정됨
- 최종 제품은 제232조 무역제재 적용 대상일 수 있음

Case 07. 스테인리스 강판

사 례 명

- [스테인리스 강판] 원산지 및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34299(2023.08.22.)

사 실 관 계

요청자	Millennia Stainless Inc.	
제 품	제 품 명	연마 및 코팅 처리된 Grade 304 또는 430 스테인리스 강판
	구 성	
	용 도	가전제품, 실외용 그릴 등 최종 제품 생산용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 7219.90.0025 • 7219.90.0080(니켈이 0.5% 이하인 경우)
제조 공정	[상세 공정] - 인도네시아 - 스테인리스강 용해 및 주조를 통해 슬래브(slabs) 제조 - 중국으로 수출 - 중국 - 슬래브를 열간 압연(hot-rolling) - 냉간 압연(cold-rolling) - 피클링(pickling) - 어닐링(annealing)을 통해 2B 밀 마감 처리 및 코일 형태로 제조 - 연마(polishing) - 시트 형태로 절단(slitting) - 한쪽 면 PVC 코팅 / 반대쪽 면 지문방지(anti-fingerprint) 코팅 - 길이 맞춤 절단(cut-to-length) -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①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19 C.F.R.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된 공정이나 재료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발생시켜야만 새로운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원산지는 해당 물품이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변형’을 거친 국가이며, 이는 물품의 명칭(name), 성질(character) 또는 용도(use)에 변화를 초래하는 가공을 의미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735009

- **(판정 결과)** 중국에서 수행된 제조 공정(슬래브를 압연, 연마, 절단, 코팅 등)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므로 스테인리스 강판의 원산지는 중국임

②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대통령 포고(Presidential proclamations 9704 and 9705)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관세 혹은 쿼터가 부과됨
- **(판정 결과)** 해당 제품(HTSUS 7219.90.0025 또는 7219.90.0080)은 관세 또는 쿼터 대상일 수 있으며, 수입 시 Chapter 99(추가 관세 분류)와 함께 Chapter 72, 73 또는 76에 따른 본래 분류도 함께 신고해야 함
- **(기타 의견)** 해당 물품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CBP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 판정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에서 발행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하길 권고함

결론

- 중국에서 수행된 제조 공정(열간·냉간 압연, 산세척, 연마 및 코팅 등)은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됨
- 최종 제품은 제232조 무역제재 적용 대상일 수 있음

Case 08. 페로실리콘 분말

사 례 명

- [페로실리콘 분말] 원산지 및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35063(2023.09.12.)

사 실 관 계

요청자	Iwatani Corporation of America		
제 품	제 품 명	페로실리콘 분말[Ferrosilicon Powder]	
	구 성	중국산 Ferrosilicon 덩어리(입경 : 10~50mm)	
	용 도	용접봉 제조 시 플럭스 원료로 사용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7202.29.005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중국산 Ferrosilicon 덩어리를 일본으로 수입 2. 일본에서 분쇄(milling) 및 파쇄(crushing)를 통해 분말로 가공 3. 표면 안정화 처리(surface stabilization treatment) 4.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쟁 점 사 항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①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19 C.F.R. §134.1 (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된 공정이나 재료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발생시켜야만 새로운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원산지는 해당 물품이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변형’을 거친 국가이며, 이는 물품의 명칭(name), 성질(character) 또는 용도(use)에 변화를 초래하는 가공을 의미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735009

- **(판정 결과)** 실질적 변형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있어 관세분류가 변경되었는지 여부가 결정적이지는 않으나, 이 경우 원재료와 최종 제품이 동일한 세번에 분류되는 점에서, 해당 분말은 새롭고 다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일본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최종 제품은 중국산임

②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대통령 포고(Presidential proclamations 9704 and 9705)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관세 혹은 쿼터가 부과됨
- **(판정 결과)** 해당 제품(HTSUS 7202.29.0050)은 관세 또는 쿼터 대상일 수 있으며, 수입 시 Chapter 99(추가관세 분류)와 함께 Chapter 72, 73 또는 76에 따른 본래 분류도 함께 신고해야 함

결론

- 일본에서 수행된 분쇄 및 표면 안정화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산지는 중국임
- 최종 제품은 제232조 무역제재 적용 대상일 수 있음

Case 09. 주방용 스테인리스 싱크 키트

사 례 명

- [주방용 스테인리스 싱크 키트]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및 원산지 표시

사 례 번 호

- NY N335300(2023.09.29.)

사 실 관 계

요청자	Kraus Plumbing USA, LLC(대리인 : Sonnenberg & Cunningham PA)	
제 품	제 품 명	• KHU110-27(Standart PRO) • KCH-1000(Loften)
	구 성	• KHU110-27 1) 스테인리스강 언더마운트 싱크(태국산) 2) 맞춤형 스테인리스강 그리드/디쉬랙(중국산) 3) 스테인리스강 드레인 어셈블리 및 캡(중국산) 4) 마운팅 하드웨어, 템플릿, 설명서 포함 • KCH-1000 1) 위 1)~4) 물품 2) 풀다운 형 주방 수도꼭지(중국산)
	용 도	주방용 스테인리스강 싱크 키트(소비자 직판용 포장)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7324.10.005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싱크는 태국에서 제조 2. 그 외 부품은 모두 중국에서 태국으로 수입 3. 싱크와 함께 포장하여 미국으로 수출	

쟁 점 사 항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부속품의 개별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분석

①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19 C.F.R.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된 공정이나 재료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발생시켜야만 새로운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다수의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조립이나 경미한 가공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물품의 명칭(name), 성질(character) 또는 용도(use)가 새롭게 변해야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

참고 판례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참고 판례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1940)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 2d 1201 (Fed. Cir. 1993)

참고 판례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1908)

참고 판례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1982)

- **(판정 결과)** CBP는 태국에서 생산된 주방싱크가 최종 제품의 가치, 중량 및 기능 면에서 우위를 점하며, 최종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다고 판단하여 원산지를 태국으로 판정함
 - 일반해석규칙 3에 따라 세트로 구성된 상품 중, 세트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품목이 제301조 조치 대상일 경우 전체 세트가 제301조 적용 대상이 되나, 해당 사례의 경우, 핵심 구성품인 싱크가 태국산이므로, 제301조 적용 대상이 아님

② 부속품의 개별 원산지 표시 의무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함
 - 세트, 혼합물 또는 복합물품에 포함된 구성품이 실질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경우, 각 구성품은 개별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판정 결과)** 본 사례에서, 그리드/디쉬랙, 드레인 어셈블리 및 드레인 캡, 풀다운 수전은 세트로 포장되었더라도 독립된 정체성을 유지하므로, 각각 중국산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마운팅 하드웨어는 최종 설치 시 싱크에 고정되어 독립적 정체성을 상실하므로, 별도 원산지 표시가 요구되지 않음

결론

- 태국에서 싱크가 제조되고 해당 부품이 핵심 기능을 수행하므로 원산지는 태국
-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품목(싱크)이 태국산이므로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 중국산 구성품(그리드, 드레인 어셈블리, 수도꼭지 등)은 중국산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마운팅 하드웨어는 별도 표기 면제 가능

Case 10. 합금강판

사 례 명

- [합금강판] 원산지 및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40819(2024.06.26.)

사 실 관 계

요청자	Align Precision Philadelphia, LLC(대리인 : Trans-Border Global Freight Systems)		
제 품	제 품 명	합금강판(Invar 36 Alloy Steel Plate)	
	구 성		
	용 도	반도체 산업용 - 마이크로칩 제조 기계 부품으로 사용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7226.91.500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프랑스 - 강 슬래브(slab)를 열간압연, 어닐링, 샷 블라스트 처리하여 판재 생산 - 초기 규격 : 두께 4.56", 폭 44.48", 길이 129.13" 2. 영국 - 화학 조성 검사 - 워터젯(Waterjet) 절단 → 최종 규격 : 두께 4.56", 폭 11", 길이 16" - 목재 상자에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쟁 점 사 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①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19 C.F.R.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된 공정이나 재료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발생시켜야만 새로운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은 물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수행되는 경미한 제조 또는 결합 공정에 의해 발생하지 않음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해당 물품이 마지막으로 ‘실질적 변형’을 거친 국가를 의미하며, 이는 물품의 명칭(name), 성질(character) 또는 용도(use)가 변경되는 가공 처리를 의미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735009*(1993.07.30.)

- **(판정 결과)** 영국에서 수행된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야기하지 않으며, 프랑스에서 판재로 수출되어 영국에서도 동일한 판재로 남아있으므로, 명칭, 성질, 용도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원산지는 프랑스임

②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대통령 포고(Presidential proclamations 9704 and 9705)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관세 혹은 쿼터가 부과됨
- **(판정 결과)** 해당 제품(HTSUS 7226.91.5000)은 관세 또는 쿼터 대상일 수 있으며, 수입 시 Chapter 99(추가관세 분류)와 함께 Chapter 72, 73 또는 76에 따른 본래 분류도 함께 신고해야 함
- **(기타 의견)** 해당 물품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CBP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 판정과 별개의 것이므로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에서 발행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하길 권고함

결론

- 합금강판의 원산지는 프랑스로 판정됨(영국에서 실질적 변형 없음)
- 최종 제품은 제232조 무역제재 적용 대상일 수 있음

Case 11. 호스클램프

사 례 명

- [호스클램프] 원산지 판정 및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41003(2024.07.15.)

사 실 관 계

요청자	Murray Corporation(대리인 : Sandler, Travis & Rosenberg, P.A.)		
제 품	제 품 명	HSS 시리즈 스테인리스 워드라이브 호스클램프	
	구 성	밴드(band), 하우징(housing), 나사(screw)로 구성	
	용 도	실내·외 호스 수리 및 이음, 누수 방지용 연결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7326.90.8688	
제조 공정	[캐나다 상세 공정] 1. 인도산 스테인리스강 코일(slitting stock)을 너비 40mm(하우징용), 12.7mm(밴드용)으로 절단 2. 절단된 강판을 밴드와 하우징으로 프레스 성형 3. 밴드에는 조임을 위한 정밀한 천공(perforation) 작업 수행 4. 밴드 및 하우징을 SAE 호스클램프 표준 J1508 규격에 맞게 성형 및 조립 5. 중국산 나사를 조립하여 최종 클램프 완성 6. 제품 세척, 세정 후 포장		

쟁 점 사 항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무역제재(제201조, 제232조, 제301조)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①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C.F.R. §134』 규정은 『19 U.S.C. §1304』의 원산지 표시 요구사항과 예외를 규정하며, 134.1(b)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의 결정은 실질적 변형에 기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단, USMCA 물품에 대해서는 『19 C.F.R. §102』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원산지 표시 규정이 적용됨
 - 『19 C.F.R. §102.11』에 의해 USMCA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에 따름
 - 1) 해당 물품이 전적으로 그 국가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 2) 해당 물품이 전적으로 자국산 재료만으로 생산된 경우
 - 3) 해당 물품에 포함된 모든 외국산 재료가 『19 C.F.R. §102.20』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하고, 모든 기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 『19 C.F.R. §102.20』에 따라 제7326호 생산에 외국산 재료가 사용된 경우 다음에 따름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25호, 제7326호 물품으로 변경된 것
- **(판정 결과)** 인도에서 캐나다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강 코일(slitting stock)은 제7219호 또는 제7220호에 분류되며, 중국에서 캐나다로 수입되는 철강 나사는 제7318호에 분류되므로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캐나다임

② 무역구제조치(제201조, 제232조, 제301조) 적용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제201조, 제232조, 제301조에 따른 무역정책 실행을 위한 원산지 판정은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름
 - 실질적 변형 여부 판단 기준 : 새로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 획득

참고 판례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1940)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1992)

참고 판례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1908)

참고 판례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1982)

- 그러나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지 경미한 공정(minor process)에 불과하여 해당 물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참고 판례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1982), *aff'd*, 702 F.2d 1022(Fed. Cir. 1983)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판정 결과)** 인도에서 수입된 스테인리스 슬리팅 코일 및 중국산 나사는 캐나다에서의 제조 공정을 통해 특정 산업 규격에 맞게 명칭, 성질 및 용도가 새롭고 상이한 상업적 물품으로 변형되었으므로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어 캐나다산으로 판정되며, HTSUS 7326.90.8688에 해당하는 호스클램프는 제201조, 제232조,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결 론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관련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므로 캐나다산으로 판정
- HTSUS 7326.90.8688에 해당하는 호스클램프는 제201조, 제232조,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Case 12. 방향성 전기강판

사 례 명

- [방향성 전기강판] 실질적 변형 여부에 따른 원산지 판정

사 례 번 호

- HQ H337102(2024.09.03.)

사 실 관 계

요청자	의뢰인명 비공개(대리인 : ArentFox Schiff LLP)		
제 품	제 품 명	방향성 전기강판(GOES:Grain-Oriented Electrical Steel)	
	구 성		
	용 도	변압기 제조용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7225.11.00	
제 조 공 정	[상세 공정]		
	• 생산은 두 개의 국가(A,B)에서 나누어 이루어지며 상세 공정은 아래와 같음		
	(1) Country A - GOES 기판(Substrate) 제조		
	① 제선(Ironmaking): 코크스 제조, 철광석 준비, 선철(pig iron) 생산		
	② 제강, 정련 및 연속주조: 산소로(Basic Oxygen Furnace)에서 강철 생산, 금속 결정화 및 연속 주조, 슬래브 절단		
	③ 열간압연: 슬래브를 특정 온도로 가열한 후 압연기를 통해 250mm에서 2.5mm 또는 2.3mm까지 감소, 압연 후 목표 코일 온도로 냉각		
	④ 열간압연코일 준비: 열간압연된 코일의 불량 구간 제거 및 재권취		
	⑤ 피클링: 열간압연 스트립 표면의 산화 스케일 제거를 위해 염산 용액에 담금		
	⑥ 1차 냉간압연: 두께를 2.5mm에서 0.60~0.70mm로 감소		
	⑦ 코일 준비: 파손 부분 제거, 용접, 권취 등 작업 수행		
	⑧ 재결정 및 탈탄 어닐링: 850~880℃에서 연속 어닐링, 냉간압연강의 재결정 유도 및 탄소 제거		
	⑨ 코일 준비: 스트립 가장자리 결함 제거를 위한 트리밍		
⑩ 2차 냉간압연: 두께를 0.60~0.70mm에서 최종 두께인 0.23mm, 0.27mm, 0.3mm 또는 0.35mm로 압연			
⑪ 코일 준비: 재권취 작업 수행			
⑫ 탈지 및 MgO 코팅: 스트립을 탈지한 후 산화마그네슘 기반 코팅 적용			

제조 과정	③ 고온 어닐링 : 1,150~1,200°C에서 어닐링하여 전기 절연 코팅을 위한 Mg_2SiO_4 기저층 형성 → 방향성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절연 코팅은 없는 상태이고, 완전히 평탄하지 않으며, 가장자리에는 물결 모양 또는 미세 균열 등의 결함이 있는 상태의 코일 형태의 기판 생성(7225.11.00) (2) Country B - GOES 최종 가공 ① 절연코팅 : Mg_2SiO_4 층은 남긴 채로 수분과 브러시로 MgO 코팅 제거 후 경화로서 건조 및 경화 처리 ② 열평탄화 어닐링 : 800~860°C에서 가열 ③ 레이저 스크라이빙 : 레이저로 기판 일부를 가열 및 냉각하여 자기적 성능 향상 ④ 가공 및 코일화 : 스트립 가장자리 및 끝단 절단, 코일형태로 성형
----------	---

쟁점사항

● 실질적 변형 해당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 (19 U.S.C.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C.F.R. §134』 규정은 『19 U.S.C. §1304』의 원산지 표시 요구 사항과 예외를 규정하며, 134.1 (b)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의 결정은 실질적 변형에 기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실질적 변형 : 명칭(name), 성질(character), 또는 용도(use)의 변화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참고 판례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그러나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지 경미한 공정(minor process)에 불과하여 해당 물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참고 판례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요청자는 Ferrostaal Metals 사례 및 CBP Ruling HQ H242034, HQ H302201를 근거로 B국에서 실시한 어닐링 공정이 실질적 변형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음
- 특히, H242034 및 H302201을 근거로 국가 A로부터 수출된 GOES 기판(substrate)은 반가공품이며, 국가 B에서 최종 상태로 변형된다고 주장

참고 판례 :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664 F. Supp. 535(Ct. Intl. Trade 1987)

- 어닐링 공정이란 강철 제품의 냉간압연 후 연성(ductility)을 복원하기 위해 고온으로 가열한 후, 물 또는 기타 수단으로 급속 냉각하는 공정임
- CIT는 어닐링 공정이 실제 화학적 조성이나 물리적 치수를 변화시키지는 않으나, 강철 내 탄소와 질소의 분포에 영향을 미쳐 냉간압연된 강철의 변형 에너지를 제거하고, 강도는 낮추는 대신 연성과 성형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
- CIT는 연성과 강도가 강철의 중요한 특성이며, 어닐링 공정은 강철의 성질(character)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다고 판단하였고, 이 공정을 통해 새롭게 부여된 강도와 연성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용도가 전용되었다고 판단
- 비슷한 맥락에서 CIT는 판유리를 가열한 뒤 급속 냉각하여 강도를 증가시키는(일반적으로 템퍼링(tempering)이라 불림) 공정 또한 새로운 상업적 제품을 창출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Guardian Industries Corp. v. United States, 3 CIT 9, 16(1982) 인용)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242034*

- 중국과 일본에서 제조된 냉간 가공 무계목 강관(cold finished seamless pipe)의 원산지 검토
- 중국에서 최초 제조자가 그린 파이프를 냉간 인발 공정을 통해 생산
- 해당 그린 파이프는 특정 최종 용도에 적합하지 않고 어떠한 산업 성능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반가공 제품으로 간주
- 일본에서 그린 파이프를 1차 어닐링, 냉간 인발, 2차 어닐링, 교정 및 피클링을 포함한 여러 단계의 공정 수행
- CBP는 반가공 제품이 ASTM A312 규격 요건을 충족하는 완제품으로 전환되었기에, 일본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Ferrostaal 판례에 부합하게 어닐링 공정이 초기 그린 파이프에 새로운 명칭, 특성, 용도를 부여한다고 판단함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2201*

- 독일에서 알루미늄 호일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스톡의 원산지 검토
- 해당 사례에서 중국산 호일스톡은 소비자 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반가공 재료로 간주
- 독일에서 1차 어닐링, 압연, 코일 감기, 2차 어닐링 등 수행
- CBP는 최종 어닐링 공정이 압연 공정으로 인해 변형되거나 수정된 결정 구조의 재결정화를 유도하였으며, 소재의 연성과 연화를 복원하고 호일의 원자 구조를 재구성하여 기계적 특성을 변화시켰다고 판정

- 그러나, 위와대조적으로 어닐링 공정이 자동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도 존재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17502*

- 비방향성 전기강으로 된 합금강 코일(ASTM A677 규격)의 원산지 검토
- 미국산 풀 하드(full-hard) 전기강 코일(7225.19.00)이 독일로 수출되어 기계적, 전자기적 특성을 달성하기 위해 어닐링 처리가 이루어지고 이후, 절연 바니시 도포
- CBP는 “ASTM A677 규격은 바람직한 철손(core-loss) 값 및 투사율(permeability) 특성과 같은 특정 특성이 압연 공정(mill processing) 중에 형성된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언급
- CBP는 “미국에서의 압연 공정으로 이미 특정 특성이 부여되었으며, 수출 시점에서 해당 강판 코일은 어닐링 및 코팅 공정에 사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명시
- 따라서, 해당 강재는 독일 수출 당시 이미 전기용으로 사용될 의도가 있었으며 “어닐링 및 코팅 공정은 그러한 용도를 단지 진전시키는 데 그친다”고 판정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55103*

- 스테인리스강 봉재 및 와이어 로드에 대한 용액 담금질 및 어닐링 처리가 강재의 연성, 연화성, 내식성 등을 극대화 하더라도, 강재가 다기능적 용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554592*

- 강재의 연성을 단순히 복원하기 위해 설계된 어닐링 공정은 원래 제품의 인장 강도 및 항복 강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여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는 어닐링 공정과 구별되며, 후자의 경우에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판단

- CBP는 HTSUS 제72류의 주해 1 (jj) 호(Chapter 72, HTSUS, Note 1 (jj))에 따라 반가공품에 이미 코일 형태로 가공된 제품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GOES 기판(substrate)은 반가공품이 아님을 밝힘
- 또한 Ferrostaal 사례에서 사건의 공정은 두 단계(어닐링, 아연도금 공정)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사례에서 법원은 어닐링이나 도금 공정 중 어느 하나만으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Ferrostaal 사례를 인용할 수도 없음을 명시
- Ferrostaal 사례 이후 CBP는 일반적으로 열처리 등에 따른 실질적 변형 여부를 처리 시간, 공정의 복잡성, 강재의 기계적 성질과 용도에 미치는 영향, 관련 자본비용 및 부가가치 등에 따라 판단함 (HQ H317502 참조)

● (판정 결과)

- 국가 B에서 이루어진 작업은 GOES 기판의 실질적 변형(명칭, 성질, 용도)을 초래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 ① (명칭) 국가 B 공정을 거친 후 GOES 기판에서 GOES로 명칭이 변경되기는 하나 명칭 기준은 실질적 변형을 판단하는 세 가지 요소 중 가장 중요도가 낮은 요소임

참고 판례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CIT 2016)

- ② (성질) 요청자는 GOES 기판이 코일 형태로 국가 B로 수출되며, 최종 완성된 GOES의 화학적 조성이 GOES 기판과 동일함을 밝히고 있음. 또한, 국가 B에서의 최종 어닐링 공정을 통해 GOES 기판의 자기적 특성과 연성이 향상된다고 주장하지만, GOES 기판 자체가 이미 비전기강에 비해 훨씬 우수한 자기적 특성을 가진 전기강이라는 점에서 성질이 변경되지 않음. 이와 더불어 국가 B의 공정을 통해 반가공 제품이 완제품으로 변형된다고 하지만, GOES 기판은 반가공품이 아님
- ③ (용도) HQ H317502와 마찬가지로 국가 A에서 제조된 GOES 기판은 국가 B에서의 후속 가공 이전에 이미 예정된 최종 용도가 존재하고, 국가 B에서 이루어지는 어닐링, 레이저 스크라이빙 등은 단지 이러한 용도를 진전시키는데 그치므로 용도의 변경 또한 없음
- 명칭, 성질, 용도 외에도 법원은 실질적 변형을 판단할 때, 부수적 또는 추가적 요소들을 고려
- 이러한 요소에는 수행된 작업의 범위와 성격, 가공 중 부가된 가치, 생산재에서 소비재로의 전환, 관세 분류의 변경 등이 포함될 수 있음(Energizer Battery 사건 참조)
- 그러나 이러한 부수적 또는 추가적 요소들의 고려는 일관되지 않으며, 수용 가능한 요소들에 대한 통일된 포괄적인 목록은 존재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부수적 또는 추가적 요소들 역시 국가 B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게 만듦
- ① 국가 A에서의 제조 공정이 국가 B에서 수행되는 작업보다 훨씬 광범위함
- ② 관세 분류 변경이 실질적 변형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는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 국가 A의 GOES 기판과 국가 B의 최종 제품이 동일한 품목분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수입된 GOES 코일이 새롭고 다른 제품이 아님을 시사함
- 위 사항들을 근거로 하여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국가 A임

결론

- GOES는 국가 A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으며, 국가 B의 공정은 단순한 후가공에 불과하므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국가 A로 판정

Case 13. 아연도금 앵글형 철강 시트

사 례 명

- [아연도금 앵글형 철강 시트] USMCA, 원산지 표시,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43690(2024.11.25.)

사 실 관 계

요청자	Metal Decking Solutions(대리인 : Miranda Brokerage)	
제 품	제 품 명	아연도금 앵글형 철강 시트 (Galvanized Angular Steel Sheets)
	구 성	비합금강 코일(브라질산)
	용 도	금속 지붕재
	원 재 료 HTSUS	비합금강 코일(7210)
	완 제 품 HTSUS	아연도금 앵글형 철강 시트(7216.91.009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브라질에서 비합금강 강재를 용해, 압연하여 강판(코일) 생산 2. 강판을 용융 아연도금 및 플라스틱 페인트 코팅 3. 멕시코로 수출 4. 멕시코에서 롤포밍 기계로 앵글 형태 성형 및 절단 5. 다양한 길이로 절단 후 미국으로 수출	

쟁 점 사 항

-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USMCA 적용 여부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①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제301조, 제232조, 제201조에 따른 무역정책 실행을 위한 원산지 판정은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름

- 실질적 변형 : 명칭(name), 성질(character), 또는 용도(use)의 변화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사안별로 이루어짐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2)

- **(판정 결과)** 멕시코에서 수행된 롤 성형 및 절단 작업은 원재료인 브라질산 비합금강 코일의 단순 마감 공정(finishing operation)에 불과하며,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무역제재 적용 목적의 원산지는 브라질임. 다만, 7216.91.0090은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② USMCA 적용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USMC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 ① 해당 물품이 USMCA 국가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 ② 해당 물품이 USMCA 국가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서 전적으로 생산되었으며, 오직 원산지재료(USMCA 국가 재료)만을 사용하여 제조된 경우

- ③ 해당 물품이 USMCA 국가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서 전적으로 생산되었으나, 비원산지재료(non-originating materials)를 사용한 경우로서, 기타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제7216호 생산에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된 경우 다음에 따름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208호부터 제7216호의 물품으로 변경된 것

참고 판례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1940)

- **(판정 결과)**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완제품은 USMC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대상이 아님

③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CBP 『19 CFR §134.1(b)』에 따르면, NAFTA 혹은 USMCA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CBP 『19 CFR §102』에 정의된 별도의 원산지 표시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 CBP 『19 CFR §102.11(a)』에 따르면, NAFTA 혹은 USMCA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에 따라 결정함

- ① 해당 물품이 전적으로 그 국가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 ② 해당 물품이 전적으로 자국산 재료만으로 생산된 경우

- ③ 해당 물품에 포함된 모든 외국산 재료가 Part 102.20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고, 모든 기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 아연도금 앵글형 철강 시트의 경우, 외국산 재료가 사용되어 (3)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CBP 『19 CFR § 102.20』에 명시된 제7216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른 호(제7208호부터 제7215호까지는 제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216호의 물품으로 변경된 것

- **(판정 결과)**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완제품의 원산지는 브라질로 표시

결 론

- 멕시코에서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원산지는 브라질임
- USMCA 세번변경기준 미충족으로 특혜관세 대상 아님
- 미국 수입 시 브라질산으로 표시해야 함
- 다만, HS코드상 제232조 무역제재는 적용되지 않음



Case 14. 벌크헤드 어셈블리

사 례 명

- [벌크헤드 어셈블리] 원산지 및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 례 번 호

- NY N345836(2025.02.28.)

사 실 관 계

요청자	ITP SA(대리인 : Roberts & Kehagiaras LLP)		
제 품	제 품 명	• 벌크헤드 어셈블리(Bulkhead Assemblies) - 36% 니켈합금 벌크헤드 어셈블리(36NiFe Bulkhead Assembly) - 저온 탄소강 벌크헤드 어셈블리(LTCS Bulkhead Assembly)	
	구 성	• 36NiFe Bulkhead Assembly - 내관(Invar 36% 니켈합금강) - 외관 슬리브(Invar 36% 니켈합금강) - steel transition pieces - 스테인리스 스틸 Inline Bulkhead • LTCS Bulkhead Assembly - 내관(Invar 36% 니켈합금강) - 외관 슬리브(비합금 탄소강) - steel transition pieces -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 Inline Bulkhead - 외관(Invar 36% 니켈합금강) - Izoflex® 파이프 - concentric reducer(Invar 36% 니켈합금강) - 전체 중량 기준 니켈합금이 대부분을 차지	
	용 도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 36NiFe : 7305.31.6090 • LTCS : 7305.31.400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 여러 국가 부품을 이탈리아로 수입 - 이탈리아 - 내측 transition pieces 및 내관을 벌크헤드 단조 부품에 용접 - Izoflex® 및 스테인리스 시트로 절연 처리 - 외측 transition pieces 및 외관을 벌크헤드 단조 부품에 용접 - 상기 조립체를 외관 슬리브에 삽입하고 concentric reducer를 양단에 용접 - 전체 조립품을 외부 코팅 처리 - 수출	

쟁점사항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①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1304)』 및 CBP 규정 『19 C.F.R. §134』에 따라, 수입물품은 최종 구매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원산지 국가명을 명확히 표시해야 함
 - “원산지(Country of origin)”는 물품이 실질적으로 제조·생산된 국가를 의미하며, 타국에서 추가적인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할 수 있음
 - 실질적 변형이란 제조 공정을 거쳐 새로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를 가지는 제품으로 탈바꿈되는 것을 의미함

참고 판례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1940)

- **(판정 결과 1)** 36NiFe 벌크헤드 어셈블리의 경우, 독일산 니켈합금강 파이프에 의해 본질적 특성이 부여된다고 판단한 바, 해당 파이프는 전체 구성요소 중 중량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표시 목적상 원산지는 독일임
- **(판정 결과 2)** LTCS 벌크헤드 어셈블리의 경우, 전체 구성요소 중 중량 기준으로 우세한 영국산 비합금강 파이프가 본질적 성질을 부여하므로, 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영국임

②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제232조에 따른 무역정책 실행을 위한 원산지 판정은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름
- **(판정 결과)** 제232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는 36NiFe 벌크헤드 어셈블리는 독일, LTCS 벌크헤드 어셈블리는 영국임

결론

- 36NiFe 벌크헤드 어셈블리 : 독일산 니켈 합금 파이프가 주된 구성품이므로 독일산으로 판정
- LTCS 벌크헤드 어셈블리 : 영국산 비합금강 파이프가 주된 구성품이므로 영국산으로 판정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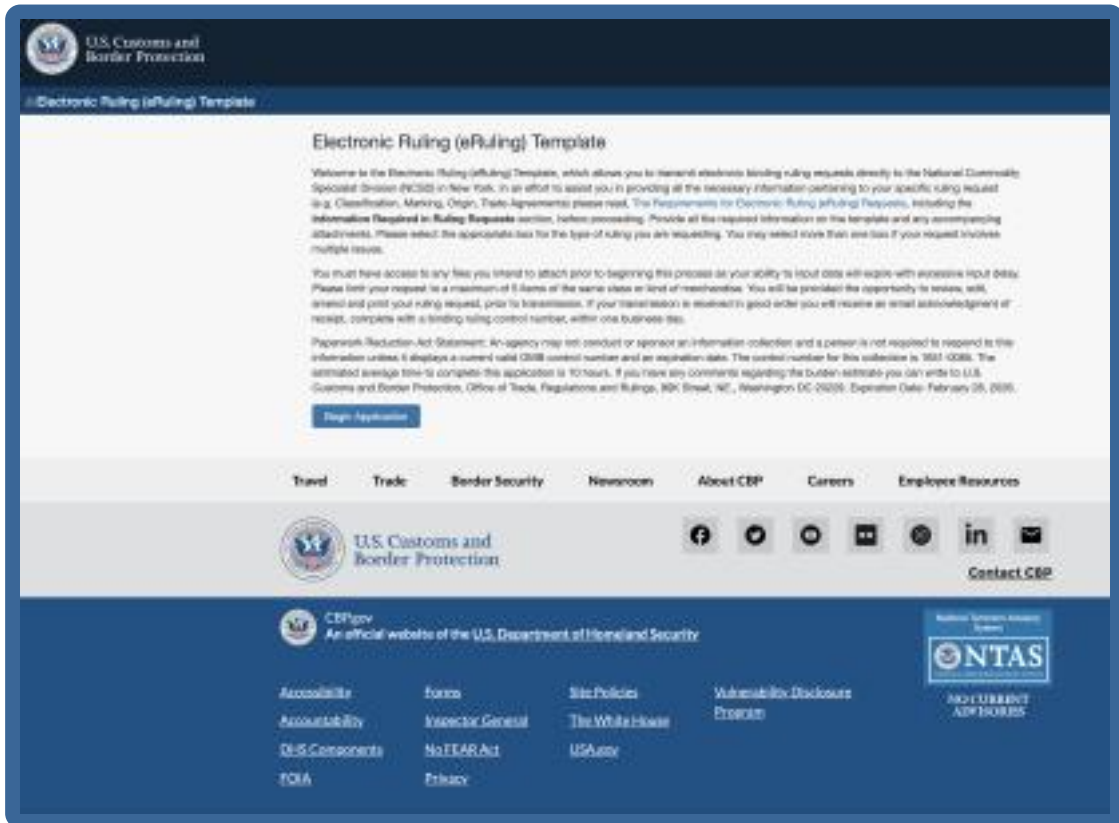
CBP 사전심사제도 신청 방법	52
CBP 사전심사 사례 조회 방법	55



CBP 사전심사제도 신청 방법



① CBP Advance Ruling 신청 홈페이지 접속



✓ <http://erulings.cbp.gov>

② 신청인 정보 작성

Ruling Requester Information

*First Name: **이름**

*Last Name: **성**

*Business Name: **회사명**

*Address 1: **주소**

*City: **도시**

*State: **주 N/A선택**

*Zip/Postal Code: **우편번호**

*Country: **Korea, South**

*Phone: **전화번호**

*Email Address: **Email 주소**

*Foreign Email Address: **Email 주소 재입력 (확인)**

③ 결정 유형 선택

Request Type **결정 유형 선택** (품목분류, 원산지 표시, 원산지, FTA 적용)

*Select Request Type (check all that apply)

Please select at least one request type.

☐ Classification

☐ Marking

☒ **Country of Origin**

Application of Trade Programs or Trade Agreement

④ 신청서 작성

Questions

Question 1 **대리인 제출 여부**

Is this request being filed on behalf of a client?

☐ Yes ☐ No

If yes, please enter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lient.

Client Company:

Address 1:

Address 2:

City:

State:

Zip/Postal Code:

Country:

Question 2 **미국 AEO 취득 기업 해당 여부**

Is your company a Trade Compliance Partner? (You must have a signed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CBP. The following link provides further information on the Trade Compliance Partner program: <https://www.cbp.gov/customs/partner-trade-compliance-program-faq>.)

☐ Yes ☐ No

If yes, please provide the Importer of Record Number:

Importer of Record Number:

Question 3 **신청물품과 동일물품에 대한 CBP 또는 미국 법원의 쟁송 진행 여부**

To your knowledge, are there any issues or requests for advice concerning this commodity pending before any CBP office or any Court?

☐ Yes ☐ No

Explain the issue or advice request pending, state before which CBP office or Court it is pending, and what advice was rendered, if any. For example, have you received CBP Notice 38 or 29 or the Issue or Discrepancy before this office?

Explanation:

Question 4 **신청물품과 동일물품에 대한 CBP Ruling 신청 이력 여부**
 Is this a re-submission of a previous ruling request which required additional information?

If yes, please provide the previous ruling number:
 Previous Ruling #:

Question 5 **신청물품에 대한 Sample 제출 여부**
 Is a sample being submitted?

If yes, please provide the tracking number:
 Tracking Number:

If yes, would you like the sample to be returned?

If yes, please provide the return label:
 Return Label:

Question 6 **신청물품의 원산지**
 If available, what is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imported product?
 Country:

⑤ 신청 상세사유 작성

Description **신청 상세사유 작성 (거래설명, 산업정보 포함)**

Text of Ruling Request (describe a description of the transaction; for example, a prospective importation of merchandise from country A). For classification requests, include sufficient information to determine the classification, such as a full and complete description of the article, principal use, commercial or technical designation, relative quantity by weight of each component, illustrative literature, photographs, chemical analysis, flow charts, CAD numbers, and any other information that may assist in determining the classification. Limit to 5 items or less of the same classification.

* Extension of text: (General Description)

WHEN SUBMITTING YOUR RULING REQUEST, PLEASE BE SURE TO INCLUDE THE REQUESTED INFORMATION FOR YOUR RESPECTIVE COUNTRY(IES) AND/OTHER ELIGIBLE INDUSTRIES (OPTIONALLY TO VIEW REQUESTS) NOTE:

⑥ 첨부자료 제출 (물품 설명자료)

Attachments **첨부자료 제출 (물품사진, 카달로그, 제조공정도 등 설명자료)**

NOTE: You can attach multiple files. The files sizes cannot add up to more than 25 MB.

Use the Attach button below to select and attach document files on your computer that support your ruling request. Acceptable file formats are: Microsoft Word (.doc, .docx), Microsoft Excel (.xls, .xlsx), Microsoft PowerPoint (.ppt, .pptx), Acrobat portable document format (.pdf), text file (.txt), JPEG image format (.jpg, .jpeg), GIF image format (.gif), Windows bitmap (.bmp), Portable Network Graphics (.png) and MP3 (.mp3).

To add attachment:

1. Click on the Attach button below.
2. Browser is first the file(s) you want to attach.

Select the file(s), and then click Open to attach the file to your requ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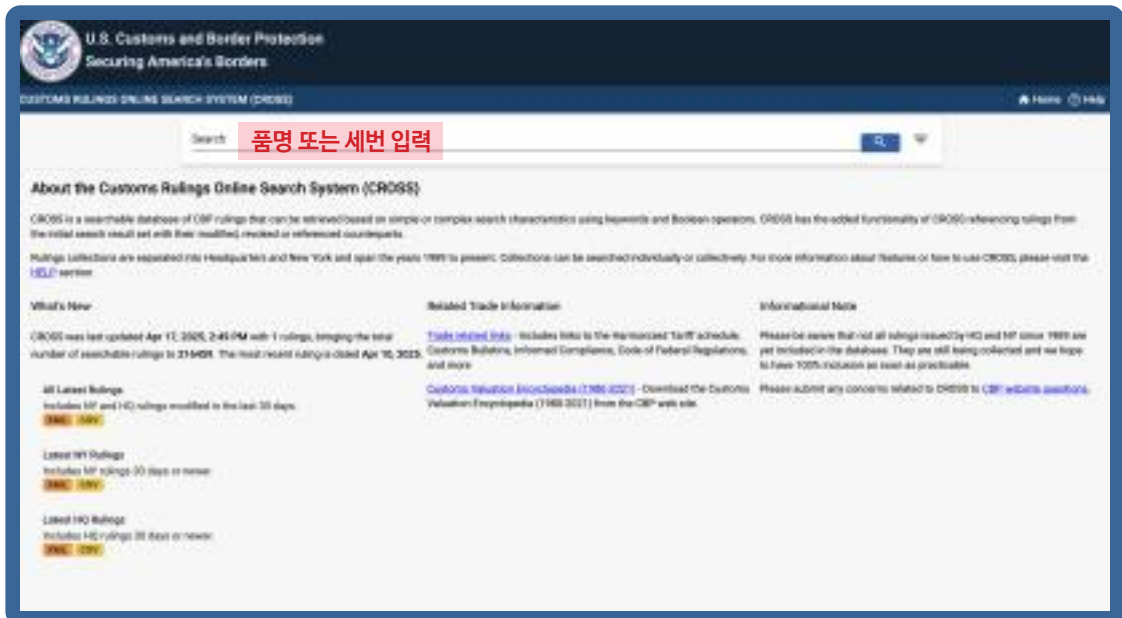
If you have already added an attachment and decided to remove it, select the red discard button (X) next to the attachment name.

CBP 사전심사 사례 조회 방법



CBP CROSS (Customs Ruling Online Search System) 조회

- 검색(search)란에 품명 또는 세번 입력 후 조회



✓ <http://rulings.cbp.gov/home>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쟁점과 사례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1편 철강제품

발행일	2025년 4월
발행처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총괄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박헌
집필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김태용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김수미, 배윤지, 배준석, 김가윤, 김지향 한국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 송경은, 권민경, 박현혁
디자인/인쇄	플러스원

관세청의 승인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쟁점과 사례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